

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

제정 2020. 12. 14 조례 제2080호
일부개정 2025. 5. 2 조례 제262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복지사 등”이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2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다.
3. “사회복지기관”이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.
4. “보수”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용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)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5. 2>

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

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 등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대책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감독한다.

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「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용인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
3.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처우개선 사업 등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사업
2.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지원 사업
3.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4.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
5.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지원
6.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
7.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 운영
8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「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5. 5. 2>

1. 삭제 <2025. 5. 2>
2. 삭제 <2025. 5. 2>
3. 삭제 <2025. 5. 2>
4. 삭제 <2025. 5. 2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 <신설

2025. 5. 2>

1.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2.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 <신설 2025. 5. 2>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1조 삭제 <2025. 5. 2>

제12조 삭제 <2025. 5. 2>

제13조 삭제 <2025. 5. 2>

제14조 삭제 <2025. 5. 2>

제15조(포상)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「용인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6조 삭제 <2025. 5. 2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